관계 부처 합동 청탁금지법TF 회의 결과

2016년 1~4차 회의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

목 차

Ⅰ. 음식물 · 선물 · 경조사비 관련 사항 ····· 1

1. 가액기준을 초과할 수 있는 식사 ····· 1

2. 가액기준을 초과할 수 있는 선물 ····· 3

3. 가액기준을 초과할 수 있는 경조사비 ····· 4

Ⅱ. 기부행위 관련 사항 ····· 5

1. 각종 바자회 · 성금 등 기부금품 모집 ····· 5

Ⅲ. 언론인의 취재지원 관련 사항 ····· 5

1. 취재를 위한 교통편의 제공 허용 여부 ····· 5

Ⅳ.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할인 관련 사항 ····· 6

1.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기업할인 프로그램 ····· 6

2. 단체 인솔자 무료입장 ····· 6

Ⅴ. 입시 · 취업추천 관련 사항 ····· 7

1. 대입시험 관련 선물 제공 등 ····· 7

목 차

Ⅵ. 외부강의등 관련 사항 ····· 9

1. 각종 연주 · 공연 · 회의 등 외부강의 해당여부 ····· 9

2. 외부강의 사례금의 연간 상한액 ····· 11

3. 외부강의 사례금 외 식비, 숙박비, 교통비 제공 ····· 11

Ⅶ. 기타 다수 질의사항 관련 FAQ ····· 12

1. 달력, 수건 등 기념 · 홍보용품 단순 전달 행위 ····· 12

2. 언론사 공동주최 공연 티켓 판매 ····· 12

3. 공공기관 유료 발간물 무료제공 ····· 12

I.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관련 사항

1 가액기준(3만원)을 초과할 수 있는 식사

□ 청탁금지법 비적용 대상자

○ 법 적용대상이 아닌 **민간인(이하 "민간인")간 식사**, 공직자등이 **민간인에게 제공하는 식사**는 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음

□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의 허용

○ 민간인이 **직무관련이 없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식사는 가액기준(3만원)을 초과하여 허용

○ 공공기관 내 직무관련이 없는 **공직자등 끼리**하는 식사는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허용

□ 기타 청탁금지법상 허용

○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식사는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허용(제1호)

○ 학교법인이나 언론사 등의 **이사회가 끝난 후 내부 기준에 따라 비상임이사에게 제공하는 식사**는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허용(제1호)

○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 **이·취임, 시무식·종무식 등의 경우**에는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허용(제8호의 사회상규)

○ 경조사, 돌, 칠순잔치 등 기념일에 공직자등 **하객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식사는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허용(제8호의 사회상규)

□ 각자 내기일 경우의 허용

○ 각자내기(더치페이)

- 직무관련자와 같이 식사를 한 후 **각자 계산**하는 것은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가 아니므로 허용

- 직무관련이 있는 어느 일방이 1차를 내고 바로 이어진 2차에서 다른 상대방이 같은 수준으로 낸 경우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허용

○ 3만원 초과분 각자내기

- 직무관련자와 같이 식사를 한 후 **가액기준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각자 계산하는 것은 허용**

※ 참고 : 가액기준(3만원) 이하 식사 가능 여부에 대한 다수 질의 사항

- 공공기관 내 직무관련이 있는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하는 경우 3만원 이내 허용
- **공직자등과 직무관련이 있는 언론인 사이**의 식사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하는 경우 3만원 이내 허용

2 가액기준(5만원)을 초과할 수 있는 선물

□ 청탁금지법 비적용 대상자

○ **민간인 사이**의 선물, 공직자등이 **민간인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음

□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의 허용

○ 직무관련이 없는 **공공기관 내 공직자등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허용

○ 직무관련이 없는 **공공기관장 사이**에 주고받는 선물은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허용

□ 기타 청탁금지법상 허용

○ 경조사 등 기념일에 **참석한 하객**인 공직자등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선물 또는 주례를 한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100만원 이하의 답례품

○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 백화점, 마트 등에서 **거래실적에 따라** 고객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선물

○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재직 중인 회사로부터** 소속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을 받는 경우

3 가액기준(10만원)을 초과할 수 있는 경조비

□ 청탁금지법 비적용 대상자

○ **민간인 사이**의 경조사비, 공직자등이 **민간인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는 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음

□ 직무관련이 없는 경우의 허용

○ 공공기관 내부 **직무관련이 없는 직원끼리** 제공하는 경조사비는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허용

□ 기타 청탁금지법상 허용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또는 공공기관 내부에서 위로·격려 등의 목적으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제1호)

○ **친족**이 제공하는 경조사비(제4호)

○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제5호)

○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재직 중인 회사로부터** 소속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경조사비를 받는 경우(제8호)

※ 참고 : 공공기관 내부에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

▪ 근무평정, 승진심사 등 인사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특정 시기에도 부조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가액기준 내에서 허용**

-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하고 **전통적인 미풍양속**이라는 점, 인위적으로 **경조사의 시기**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

Ⅱ. 기부행위 관련 사항

□ 각종 바자회 · 성금 등 기부금품 모집

자선바자회, 불우이웃 성금, 재해구호금 모금 등을 할 수 있나요?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등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당연히 허용됩니다.

Ⅲ. 언론인의 취재지원 관련 사항

□ 취재를 위한 교통편의 · 식사 제공 허용 여부

공식적 행사를 취재하는 기자단이나 행사 관련 임직원에게 교통편의·식사를 제공해도 되나요?

○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허용됩니다.

- 그런데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는 일률적 제공에 해당되지 않으나, 참석자 중 **역할별로 합리적으로 차등하여 제공하는 것은 일률적 제공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Ⅳ.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할인 관련 사항

□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기업할인 프로그램

군인, 공무원, 교사, 언론인 등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기업 상품 할인 프로그램은 허용되나요?

○ **기업이 사회적 공헌 등의 목적**에 따라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기업 상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됩니다.

□ 단체 인솔자 무료입장

현장학습, 체험학습 등을 위한 시설에 학생 단체를 인솔하는 교사를 무료로 입장시키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 **학생 단체를 인솔하는 교사**는 해당 시설의 이용이 목적이 아니라 학생의 **지도·인솔이라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료입장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됩니다.

Ⅴ. 입시, 취업관련 사항

□ 수능시험 떡 등 제공

선배 또는 선생님이 학생(후배)에게 수능시험을 잘 보라고 주는 떡 등이 허용되나요?

○ 학생은 법 적용 대상자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학부모 단체의 간식 제공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부모 단체가 수능을 앞두고 고3 학생들을 격려하고자 간식을 고3 학생 전원에게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나요?

○ 학생은 법 적용 대상자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수능 격려 플래카드 부착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부모 단체가 고3 학생들의 수능시험을 격려하기 위해 플래카드를 부착하는 것이 법 위반인가요?

○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가 아니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대학 입시 설명회 시 식사제공

신입생 유치를 위한 대학 입시 설명회에 인근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및 선생님을 초청하여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나요?

○ 학생은 법 적용 대상자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신입생 유치를 위한 대학 입시 설명회가 **공식적 행사**에 해당할 경우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식사는 허용됩니다. 다만,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내의 식사**는 허용됩니다.

□ 대학교수의 취업 추천

대학 교수가 민간기업에 제자에 대한 취업 추천을 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 민간 기업 관계자는 **공직자등이 아니므로** 대학 교수가 **민간기업**에 제자에 대한 취업 추천을 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Ⅵ. 외부강의 등 관련 사항

□ 연주·공연·전시

공직자등이 연주회 또는 전시회에서 연주·공연 또는 전시를 하는 것도 외부강의등에 포함되나요?

○ 연주회·전시회에서의 연주·공연·전시는 문화예술행위로서, 의견·지식을 전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회의형태도 아니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각종 회의 진행

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 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 법령상 위원회 등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법령(조례·규칙을 포함)에 근거한 위원회 등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시험출제

공직자등이 시험출제위원으로 위촉되어 시험출제업무를 하는 경우 출제위원으로 참석하는 행위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 시험출제는 응시자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를 내는 행위로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동영상 강의

온라인으로 동영상 강의를 하는 경우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 온라인 강의의 경우 전달매체가 온라인 형식일 뿐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 다큐멘터리 제작 관련 원고 작성

방송사가 문화재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문화재 전문가인 교수에게 원고를 써달라고 요청한 경우 외부강의등인가요?

○ 다큐멘터리 방송 제작 관련 원고작성은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내는 기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외부강의 사례금의 연간 상한액

외부강의등으로 동일기관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수수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요?

○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법 제10조는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 제8조의 특별규정이며, 법 제10조에서는 외부강의등 사례금의 연간 상한액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소속기관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외부강의 사례금 외 식비, 숙박비, 교통비 제공

외부강의등을 한 공직자등에게 식비, 숙박비, 교통비를 제공하는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포함되나요?

○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공무원 여비 규정」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외부강의등 사전신고 관련

외부강의등 사전 신고 내용에 개인의 정치적 견해와 사상·신념 등 개인정보가 담겨있어 프라이버시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요?

○ 외부강의등 사전신고는 외부강의등 사례금을 통한 우회적인 금품등 수수를 차단하여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Ⅶ. 기타 다수 질의사항 관련 FAQ

□ 달력, 수건, 생수 등 기념품 · 홍보용품 단순 전달 행위

교사, 공공기관장 등의 공직자등이 다수인(학생, 소속직원 등)에게 단순히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달력, 수건, 생수 등 기념품·홍보용품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해 제작된 기념품・홍보용품을 공직자등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전달의 편의를 위해 전달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 언론사 공동주최 공연 티켓 판매

언론사가 업체와 공동으로 공연을 주최하면서 해당 공연 티켓을 판매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나요?

○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이루어지고 공연 티켓의 시가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허용됩니다.

□ 공공기관 유료 발간물 무료제공

시중에서 유료로 판매되는 공공기관의 백서 등 발간물을 유관기관(공직자등 개인 제외)에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나요?

○ 공공기관 백서 등 유료 발간물은 비록 시중에서 유료로 판매되는 경우라도 수익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의 홍보를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를 유관기관에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닙니다.